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 (제95조제2항제2호 관련)

구 분	특별시, 광역시, 특별 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	시		군	자치구
		행정구가 설치된 시	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		
면 적	165.3㎡	132㎡	99㎡	99㎡	99㎡

비고: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비서실과
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.